

제 749 호

1980. 2. 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전 철 : 문화공보관 심재섭

전 화 75-7834

일 카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5-6090

# 시 보

## 제 749 호

### ◎ 조례

제 1398 호 :	서울특별시 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	3
제 1399 호 :	서울특별시 중학교무시험 입학후첨방법과 학교군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 ◎ 고시

제 30 호 :	도시계획사업(백화점) 시행허가	8
제 31 호 :	도시가스내관공사비 기준액결정	8
제 32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학교, 도로) 지적승인	9
제 33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0
제 35 호 :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1
제 36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2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30 호 :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설시계획공람공고	13
제 33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설시계획공람공고	14
제 7 호 :	(아포구공고) : 동인개작공고	20
제 10 호 :	(마포구공고) : 농인개작공고	20
제 8 호 :	(강서구공고) : 공인개작공고	21

◎ 예 규

제 390 호 :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번호규정중개정규정	21
-----------	------------------------	----

조례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업용수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1980년 2월 2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98 호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업용수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 45 조 를 제 38 조 로 한다.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공업용수사용료) ① 공업용수 사용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업용수 사용료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사용요금} = (\text{기본요율} \times \text{급수신청량}) + (\text{계량요율} \times \text{사용량}) + (\text{초과요율} \times \text{급수신청량} - \text{초과한 사용량})$$

제 10 조를 제 11 조로 하고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 10 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요금	계량요금	초과요금
㎡당 11원	㎡당 4원	㎡당 3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의 개정에 따른 기본요금 산정방식의 변경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30일간의 계동주지 기간을 설정하고 동기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할 수 있다.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0. 2.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

21-4 제 749 호 시

보 1980.2.2

## ⑤ 서울특별시 조례 제 1399 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학교군 및 중학구) ① 학교  
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  
여 별표와 같이 10개의 학교군과  
1개의 중학구를 둔다.

② 학교군별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

및 국민학교는 소속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 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배정의 예외) ① 재적 학교가  
속한 학교군과 거주지가 속한 학교  
군이 상이 한자에 대하여는 통학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 소속 학교  
군에 배정할 수 있다.

② 학교군별 수용 능력 또는 통학의  
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군 내 배정 학교를 재한 또는  
인근 학교군에 속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1980.2.6.)

이 조례는 198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별표』

## 학교군 소속지역

학교군	소 속 지 역				비 고
	구별	해 당	농	별	
1	도봉구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쌍문동, 창동, 월계동, 상계1동, 도봉동, 방학동			교육법 시행령 제 2 조의 규정
	성북구	성북동1가, 성북동, 동소문동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7가, 삼선동1가, 2가, 3가 4가, 5가, 동신동1가, 2가, 3가, 4가, 5가, 돈암동, 안암동1가, 2가, 3가, 4가, 5가, 정릉동, 총암동, 상월곡동, 하월곡동, 장위동, 전음동			에 의하여 자 치단체간의 합 의하에 관할구 역을 달리 한 국민학교에 취 학한 자에 대 하여는 재적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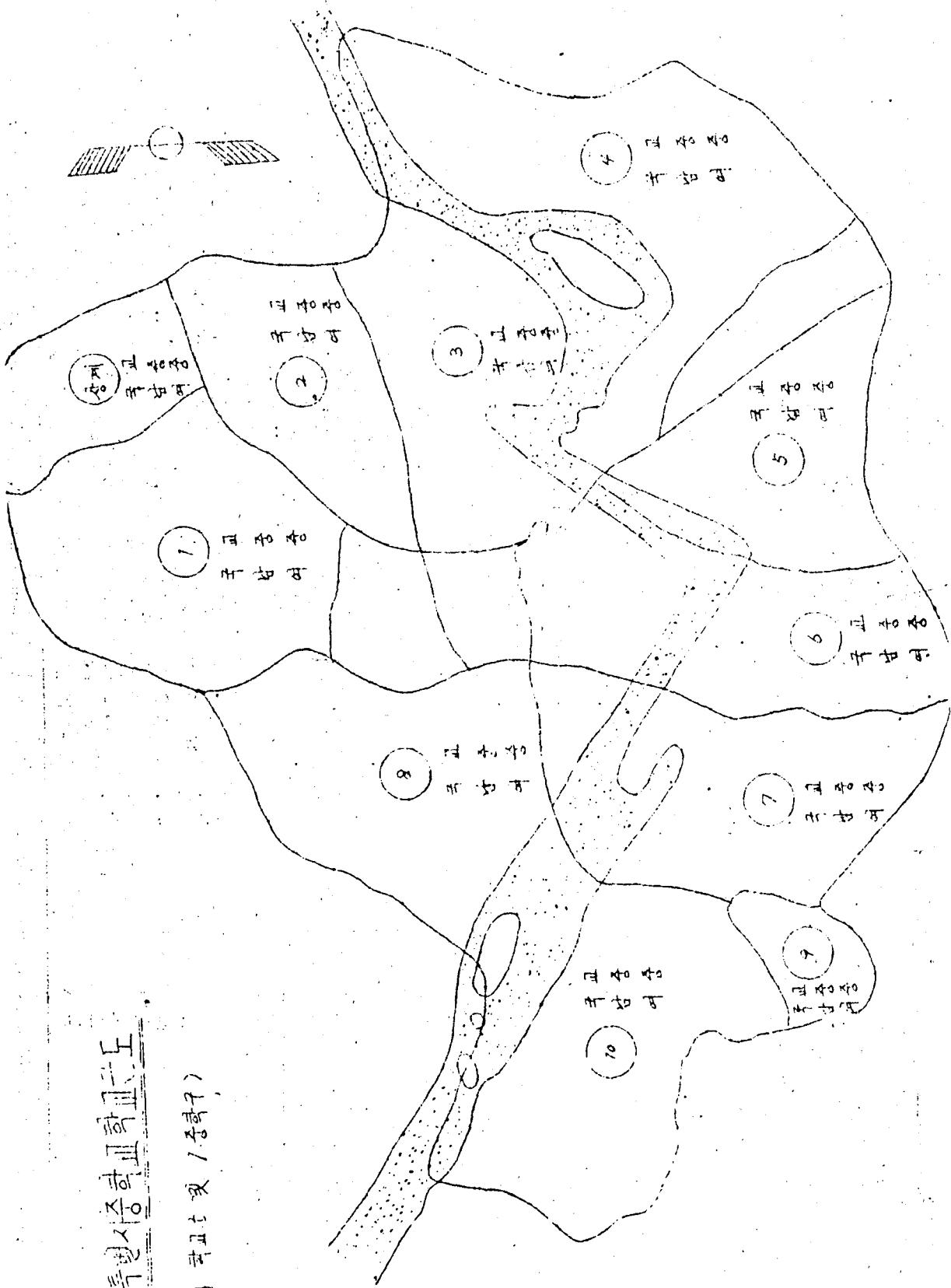
학교군	소 속 지 역		비 고
	구별	해 당 동 별	
	종로구	명륜동 1가, 2가, 3가, 4가, 혜화동, 연지동, 연건동, 원남동, 충신동, 효제동, 종로 5가, 6가, 이화동, 동숭동, 와룡동,	교의 해당 학교군에 속할 수 있다.
2	동대문구	전 역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성북구	석관동, 보문동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7가,	
3	성동구	전 역	
	종 구	방산동, 오장동, 입정동, 산림동, 초동, 흥인동, 황학동, 신당동, 무학동, 회현 1가, 2가, 3가, 중무 1가, 2가, 3가, 4가, 5가, 명동 1가, 2가, 남산 1가, 2가, 3가, 전동 1가, 태평로 1가, 2가, 무교동, 다통, 을지로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7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남대문로 1가, 2가, 3가, 4가, 5가, 양동, 소공동, 북창동, 남창동, 전동 2가, 인현 1가, 2가, 예관동, 북정동, 필동 1가, 2가, 3가, 주자동, 남학동, 예장동, 장충 1가, 2가, 상림동, 광희 1가, 2가, 주교동	
4	강동구	전 역	
5	강남구	전 역	
6	용산구	전 역	
	관악구	전 역	

21-6

제 749 호 시

보 1980.2.2

학교군	소 속 지 역			비 고
	구 별	해 당 동	별	
7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7가, 8가, 여의도동, 당산동, 당산동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도림동, 문래동,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양평동,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신길동, 대림동, 양화동, 영등포동, 신도림동, 구로동, 가리봉동, 득산동, 시흥동			
8 은평구	전		역	
서내문구	전		역	
마포구	전		역	
중구	정동, 서소문동, 순화동, 충정로 1가, 의주로 1가 2가, 봉래동, 1가, 2가, 종립동, 만리동, 1가 2가,			
종로구	청운동, 궁정동, 창성동, 누상동, 옥인동, 척선동, 체부동, 내자동, 당주동, 세종로동, 청진동, 중학동, 판훈동, 권농동, 낙원동, 신교동, 효자동, 통인동, 누하동, 통의동, 필운동, 사직동, 내수동, 도림동, 신분로 1가, 2가, 종로 1가, 2가, 3가 4가, 서린동, 수송동, 공평동, 견치동, 운니동, 익신동, 경운동, 판칠동, 인사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팔판동, 삼청동, 사간동, 송현동, 가회동, 재동, 계동, 원서동, 돈의동, 묘동, 훈정동, 봉익동, 판수동, 장사동, 예지동, 인의동, 구기동, 평창동, 부암동, 신영동, 흥지동, 교남동, 평동, 송일동, 교북동, 흥파동, 행촌동, 무악동,			
9 영등포구	개봉동, 고척동, 오류동, 궁동, 천왕동, 항동, 온수동			
10 강서구	전		역	
상계학구	도봉구	상계 2동, 3동, 4동, 공릉동, 중계동, 하계동		



100m 해고지대 / 가로암

100m 해고지대 / 가로암

21-8 제 749 章 시

보 1980. 2. 2.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 호

도시계획사업 (백화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426호(79.10.2)로  
시설 결정되고 동고시제 450호(79.10.23)  
로 지적승인된 대지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제 25조 및 동법시행령제 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백화점)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80. 2. 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시행 의위치 : 강남구청 담동  
산 67-61, 135, 136 호

2. 사업의 종류 및 위치 : 도시계획사업  
(백화점) 가칭 강남백화점  
3. 사업 규모 : 대지 : 3,097m<sup>2</sup> (937.1평)  
연건평 : 14,594.70m<sup>2</sup> (4,414.88평)  
4. 사업의 시행자 : 강남구청 담동 산 67-2  
진영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익진  
5. 사업의 확수 및 준공 예정일 : 허가일로  
부터 10일 이내  
준공 예정일 : 81. 5. 30.  
6.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별첨 (도면 생략)  
7. 공사선 계도면 : 별첨 (도면 생략)  
※ 도면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 호

도시가스내판공사비 기준액 결정

1.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제 5조제 2항 및  
동시행규칙제 7조의 3 규정에 의거 도  
시가스내판 공사비의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0. 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부설비 (각항 부가세 제외)

품 명	수 량	단 위	단 가	비 고
스레트설침합공	1	개 소	635원	80년 공사일위대가표
벽 채 친 공	1	"	1,007원	
스 라 브 친 공	1	"	2,684원	

제 749 호 시

보 1980. 2. 21-9

## 나. 연소기개조공사(국산품기준)

- 1) 연소장치 1개소당 1,700 원  
 2) " 2 " 2,100 "  
 3) " 3 " 2,400 "

다. 호스연결공사비 1개소 900 원

라. 연소기개조와 호스연결동시공사시  
는 연소기개조공사비를 적용한다.마. 기타부품비는 당월 한국물가조사  
기관협의회와 한국산업경영기술연구  
소에서 발행하는 물가자료지에 제  
상된 최저가액으로 한다.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학교, 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시장, 학  
교, 도로)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조 규정파  
건설부고시제 463호(79.12.10)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2. 1.

서 울 특 별 시 장

## 가. 도시계획시설(시장)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평)	비 고
신 설	봉원소매시장	관악구봉천동 188-4	359	

## 나.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낙성국민학교	관악구봉천동신림추가지구 240 부터	( 2,857.1평 ) 12,750 m <sup>2</sup>	
변경	"	관악구봉천동신림추가지구	( 4,874 평 ) ( 총 1,017 평 ) 16,112 m <sup>2</sup>	
기정	경문고등학교	관악구동작동산 4 - 2 일대	( 10,846 평 ) 35,855 m <sup>2</sup>	
변경	"	"	( 10,652 평 ) ( 감 194 평 ) 35,213 m <sup>2</sup>	

21-10 세 749 호 시

보 1980. 2. 2.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평)	비 고
기정	영락상업고등 학교	관악구봉천동산 174-590	( 2,485평 ) 8,215m <sup>2</sup>	
변경	"	"	( 4,042평 ) 13,363m <sup>2</sup>	( 증 1,557평 )

##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튜별	폭원(m)	연장(m)	기 접	종 접	비 고
기정	소로	3튜	6	40	봉천동 240 구획	봉천동 240 구획	
변경	"	3"	6	40	"	"	폐지
기정	"	3"	6	90	" 174-4	"	
변경	"	3"	6	"	"	"	폐지
설설	"	3"	6	200	" 174-1	" 산 1-30	신설
기정	"	3"	6	31	" 산 174-185	" 산 174-587	
변경	"	3"	6	31	"	"	폐지
기정	"	4"	4	31	" 산 174-590	" 산 174-568	
변경	"	4"	4	31	" 174-590	"	"
기정	"	4"	4	31	" 174-599	" 산 174-601	
변경	"	4"	4	31	"	"	"
기정	"	4"	4	31	" 산 174-607	" 산 174-608	
변경	"	4"	4	31	"	"	"
기정	"	4"	4	31	" 산 174-610	" 산 174-609	
변경	"	4"	4	31	"	"	"

※ 릴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배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2. 1.

서 울 특 별 시 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2		8m	82m	강서구가양동 241-3	가양동 234	

별첨도면표지와 같음(도면생략)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 호

##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7호(79.9.4)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된 구기동  
도로 및 외교관공관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437호(79.10  
15)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사유가 발  
생하였기 공법공고 편하고 도시계획  
법 제 25조 및 제 26조 전실부고시  
제 41호(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  
자에 대하여는 공시 송달할 것임.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2. 4.

서울특별시장

- 1) 사업명: 도시계획사업 (구기동외교관단지조성사업)
- 2) 사업시행지위치: 구기동 158번지 일대
- 3)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4) 사업시행기간: 79.4-80.2.29
- 5) 사업규모: 면적: 12,605평  
사업비: 1,685,058천원
- 6) 사용 또는 수용 할 재산의 표시: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 성명:

인 가 증

1. 사업시행의위치: 서울종로구구기동 158번지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구기동외교관공관단지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면적: 12,605평  
사업비: 1,685,058천원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사업인가번호: 서울특별시 고시제 35호
6. 사업기간: 79.4 - 80.2.29.

21-12 제 749 호

시

보 1980.2.2

위와 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80.2.4  
서울특별시장

## (인가조건)

-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별첨 계획설계도서(평면도)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조사서

순번	소재지		지목	평수	등급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1	구기동	126-22	대	175 ㎡		구기동 126-5	이충성	
2	"	126-19	"	202 ㎡		" 126-19	강승만	
3	"	126-3	"	188 ㎡		" 126-3	최광복	
4	"	125-1	"	50 ㎡		창천동 72-37	고윤석	

## 건물조사서

순번	소재지		구조	평수	등급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1	구기동	126-3	콘크리트 벽 옥 개	지하 7.56 ㎡ 26.19 ㎡		구기동 126-3	최광복	
2	"	126-5	미화조제멘와습	12.91 ㎡		구기동 126-5	이충성	
3	"	126-19	"	23.10 ㎡ 지하 4.23 ㎡		" 126-19	강승만	

## ⑤ 서울특별시고시제 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증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20호(80.1.23)

로 결정 고시된 도봉구판내 수유동 348-2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63호(79.12.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제 749 호

시

보

1980.2.2 21-13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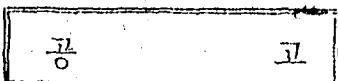
1980.2.4

서 울 특 별 시 장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증인

구분	등급	류별	속원	연장	기적	종적	비고
기정	소로	3	6m	104m	수유동 351	수유동 산 61	
"	"	"	"	108m	"	"	위치변경

## o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은(도면생략)



가첨부.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0 호

##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설시계획 공람공고

1980.2.1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설부고시제 203호(79.12.30) 및  
전고시제 232호(77.12.1)로 시설  
결정고시된 해당동(5km 400m) - 성  
수동(8km) 및 사당동(26km 290m)  
- 신림동(31km 600m), 신림동  
(32km 400m) - 신도림동(35km 800m)  
간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구간  
내 저축토지의 도시계획(고속철도)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의 2  
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 공 람 개 요

## 1. 사업장의 위치:

성동구: 해당동(1.16.41번지 일대)

성수동 1가(656번지 일대)

사근동(309번지 일대)

관악구: 사당동(541번지 일대)

봉천동(1861번지 일대)

신림동

영등포구: 신도림동, 신대방동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가. 폭 10미터 - 30미터

21-14 제 749 호 시

보 1980.2.2

- 나. 면적 : 10,810 미터  
 하왕십리 ( 5 km 400 m ) - 성수동  
 ( 8 km ) 간 2,600 미터  
 사당동 ( 26 km 790 m ) - 신림동  
 ( 31 km 600 m ) 간 4,810 미터  
 신림동 ( 32 km 400 m ) - 신도림동  
 ( 35 km 800 m ) 간 3,40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차수 및 준공예정 : 인가일 ~  
 83.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 생략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목록  
 : 별첨 ( 생략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33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제 177 호 ( 62.12.8 )  
 로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 보고  
 ( 112 m ) 서울시 고시제 545 호  
 ( 78.10.20 )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시  
 고시제 682 호 ( 78.12.23 )로  
 지적고시된 ( 8 m ) 이화동 - 동숭아  
 파트 도로 개설공사 구간내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  
 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25 조 2 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월간

-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  
 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알을 한다.
3.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전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가. 공고기간 : 1980.2.4 ~ 1980.2.17
- 나. 공고장소 : 종로구청 계시판

1980.2

서울특별시 장

## 공람개요

1. 사업의 시행지 : 종로구 충신동  
 53-16 ~ 이화동  
 9 의 313 앞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화로 - 동  
 숭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8 m - 12 m  
 = 506 m ( 112 m 구간  
 180 m ,  
 8 m 구간  
 326 m . )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종로구청장 )
5.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  
 차수일 : 인가일로 부터  
 준공예정일 : 1980.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다음

## 토 지 조 서

순번	소재지		지목	명수	등급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주 소	성명	
1	충신동	53-25	대	23.0坪		충신동 53-1	정명채	
2	"	53- 2	"	82.6 "		" 53-2	박준자	
3	"	53- 27	도로	36.8 "		구의동 222-38	심현남	
4	"	53- 26	대	21.6 "		충신동 53-3	주세진	
5	"	51- 1	"	42.3 "		" 51	이영순	
6	"	50- 3	"	65.8 "		" 50	유영순	
7	"	49- 1	"	44.2 "		" 49	홍철희	
8	"	5- 88	"	23.1 "		" 5-88	남숙희	
9	"	5- 91	"	89.9 "		" 5-37	석양순	
10	"	5- 92	"	5.5 "		" 5-38	이동순	
11	"	5- 90	"	58.1 "		" 5-11	이임성	
12	"	5- 34	"	26.4 "		" 1-28	김홍기	
13	"	5- 87	"	26.4 "		" 5-87	안이진	
14	"	5- 89	"	12.3 "		" 5-1	박경삼	
15	"	4- 1	"	58.2 "		" 4	이충운	
16	"	3- 1	"	59.4 "		" 3	심양섭	
17	"	2- 1	"	56.5 "		" 2	박길원	
18	이화동	14- 1	"	5.9 "		이화동 14	이보현	
19	"	13- 1	"	52.9 "		" 13-1	김명순	
20	"	12- 6	"	4.8 "		" 12-2	김용례외4인	
21	"	12- 5	"	24.1 "		" 12-3	박한영	
22	"	12- 4	"	53.9 "		" 12-1	김옥실	
23	"	11- 7	"	10.0 "		" 11	김학봉	
24	"	11- 6	"	30.3 "		" 11-2	김수봉	
25	"	11- 5	"	7.8 "		" 11-4	이필숙	
26	"	11- 1	"	27.4 "		" 11-1	심준식	
27	"	10- 41	"	55.8 "		" 10-5	정용준	
28	"	10- 48	"	58.9 "		" 10-5	김진준	

21-16 제 749 호 시

보 1980.2.2

순번	소재지		자목	평수	등급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주	성명	
29	이화동	10-47	대	53.8㎡		이화동	10-9	전영민외1인
30	"	10-59	"	14.6㎡		"	"	"
31	"	10-46	"	54.3㎡		"	10-2	김기화
32	"	10-58	"	30.9㎡		"	"	"
33	"	10-13	"	30.4㎡		"	10-13	민영돈
34	"	10-14	"	56.2㎡		"	"	"
35	"	10-24	"	52.6㎡		"	10-24	이임성
36	"	10-56	"	16.9㎡		"	10-12	전후종
37	"	10-3	"	43.3㎡		"	10-3	정운영
38	"	10-38	"	2.0㎡		"	"	"
39	"	10-3	"	38.3㎡		"	10-3	이봉개
40	"	10-38	"	4.6㎡		"	"	"
41	"	10-51	"	14.3㎡		"	"	국수
42	"	10-50	"	32.1㎡		"	10-36	이득수
43	"	10-49	"	5.9㎡		"	10-35	류영한외1인
44	"	9-355	"	18.0㎡		"	9-24	이완종
45	"	9-356	"	113.0㎡		"	9-265	양명순
46	"	9-5	"	113.4㎡		"	9-5	이평산
47	"	9-359	"	56.8㎡		"	9-41	이문전
48	"	9-360	"	41.7㎡		진농동	66-76	한복형외1인
49	"	9-362	"	32.5㎡		"	"	국
50	"	9-361	"	0.3㎡		이화동	9-29	이윤용
51	"	9-400	"	34.6㎡		종로4가	63-1	간현옥
52	"	9-401	"	23.5㎡		"	"	"
53	"	9-402	"	51.0㎡		"	"	"
54	"	9-398	"	21.9㎡		이화동	9-32	김석영
55	"	9-399	"	11.1㎡		"	"	"
56	"	9-386	"	96.2㎡		"	9-245	박준금
57	"	25-18	"	3.0㎡		성북동1가	35-1	이교홍

제 7.49 호 시

보 1980.2.2 21-17

순번	소재지		지목	면수	등급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58	이화동	9-405	대	2.4 ㎡			국	
59	"	9-404	"	1.7 "			"	
60	"	9-403	"	4.1 "			"	
61	"	9-397	"	16.3 "			"	
62	"	9-396	"	48.2 "			"	
63	"	9-394	"	8.3 "			"	
64	"	9-393	"	9.3 "			"	
65	"	9-392	"	16.7 "			"	
66	"	9-391	도로	17.8 "			"	
67	"	9-304	대	3.3 "			"	
68	"	9-390	도로	9.5 "			"	
69	"	9-389	"	16.8 "			"	
70	"	9-199	대	19.2 "			"	
71	"	9-200	"	13.9 "			"	
72	"	9-196	"	28.4 "			"	
73	"	9-388	"	5.0 "			"	
74	"	9-154	"	29.8 "			"	
75	"	9-379	"	21.7 "			"	
76	"	9-380	"	21.3 "			"	
77	"	9-381	"	8.9 "			"	
78	"	9-382	"	89.1 "			"	
79	"	9-153	"	27.4 "			"	
80	"	9-384	"	7.6 "			"	
81	"	9-385	"	5.4 "			"	
82	"	9-387	"	10.8 "			"	

21-18 제749호

시

보 1980.2.2

순번	소 개 지		구 조	평 수	등 금	소 유 자	
	동	지번				주 소	성 명
1	중 신	53-2	목 조 와 즐	12.0 평		중신동 53-2	박 순 자
2	"	53-3	"	5.0 "		" 53-3	주 세 진
3	"	53-1	"	2.0 "		" 53-1	정 명 채
4	"	51	"	7.34 "		" 51	이 영 순
5	"	50	"	12.0 "		" 50	유 영 철
6	"	49	"	4.0 "		" 49	홍 천 희
7	"	5-38	"	1.5 "		" 5-38	이 순 희
8	"	5-37	"	17.0 "		" 5-37	이 선 희
9	"	5-88	"	3.0 "		" 5-88	남 축
10	"	5-87	"	4.0 "		" 5-87	이 진 기
11	"	5-34	"	3.0 "		" 1-28	김 기 성
12	"	5-11	"	8.5 "		" 5-11	이 종 운
13	"	4	"	7.94 "		" 4	박 결 원
14	"	2	"	5.0 "		" 2	
15	이화동	13-1	목 조 초 즐	8.91 "		이화동 13-1	김 명 순
16	"	12-2	목 조 합 석 즐	2.0 "		" 12-2	김용례 외 4인
17	"	11-2	목 조 초 즐	7.8 "		" 11-2	조 한 순
18	"	11-1	"	4.29 "		" 11-1	심 준 을
19	"	10-5	목 조 와 즐	1 ) 9.5 "		" 10-5	정 용
				2 ) 3.0 "			
				지하) 1.0 "			
20	"	10-9	목 조 와 즐	8.0 "		" 10-9	전영민 외 1인
21	"	10-4	"	7.0 "		" 10-4	김 기 화
22	"	10-13 10-14	목 조 세 벤 와 즐	2.3 "		" 10-13	민 영 돈
23	"	10-24	"	4.5 "		" 10-24	이 임 성
24	"	10-3 -38	연 와 조 평 옥 개	1 ) 7.4 "		" 10-3	이 봉 재
				2 ) 7.4 "			
				3 ) 7.4 "			

제 749 호 시

보 1980.2.2 21-19

순번	소재지 동 지번	구조	결수	등급	소유자	
					주소	성명
25	이화동 10-3 -38	연와조평옥개	1) 6.0 평 2) 6.0 " 3) 4.16 "		이화동 10-3	정운영
26	" 10-36	세멘부력명옥개	1) 6.0 " 2) 6.0 " 3) 6.0 "		" 10-36	이득수
27	" 9-42	목조와습	3.0 "		천농동 66-76	한복형회1인
28	" 9-41		6.0 "		이화동 9-41	이문전
29	" 9-265		9.25 "		" 9-265	양명순
30	" 9-5		15.5 "		" 9-5	이평산
31	" 9-245	철근CONC평옥개	1) 10.32 " 2) 10.9 "		" 9-245	박준금
32	" 9-32	목조와습	8.0 "		" 9-32	김석영
33	" 산1-2제 32호 세멘부력세멘와습		1) 5.8 "		" 산9-32	안수경
34	" 산1-2제 17호	"	1) 2.3 " 2) 0.7 "		" 산9-17	안자문
35	" 산1-2제 22호	"	1) 2.4 " 2) 0.6 "		" 산9-22	김린화
36	" 산1-2제 21호	"	1) 3.4 "		" 산9-21	황정순
37	" 산1-2제 20호	"	1) 3.9 "		" 산9-20	김승구
38	" 산1-2제 19호	"	1) 9.9 " 2) 4.1 "		" 산9-19	김창구
39	" 산1-2제 17호	"	1) 5.8 "		" 산9-17	이태순
40	" 산1-2제 15호	"	1) 9.9 " 2) 4.1 "		" 산9-15	김동열
41	" 산1-2제 13호	"	1) 9.9 " 2) 4.1 "		" 산9-13	김삼순
42	" 산1-2제 11호	"	1) 9.9 " 2) 4.1 "		" 산9-11	홍인숙
43	" 산1-2제 8호	"	1) 9.9 " 2) 4.1 "		" 산9-8	백금래

21-20 제 749 호

시

보

1980.2.2

◎ 마포구공고제 7호

동인개작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직인 및 개인을 개작 및 폐인하였기 동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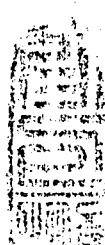
마포구청장

1. 폐인대상동: 서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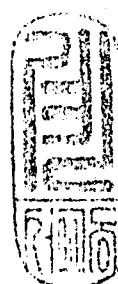
2. 폐인일시: '80.2.10. 09:00

3. 폐인인영: 다음

서교동  
폐인



개  
작  
인



◎ 마포구공고제 10호

동인개작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동장직인 및 개인을 개작 및 폐인하였기 동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2.4

마포구청장

1. 개인대상동: 신공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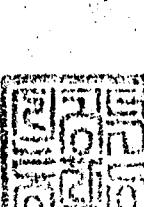
2. 사용일시: '80.2.15. 09:00

3. 개인공인인영: 다음

신공덕동  
폐인



개  
작  
인



## ◎ 강서구공고제 8 호

## 공인개작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직인 및 계인을 개작하였기 농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 개작사용 년월일 : '80.1.
2. 개작된 직인 및 계인 : 화곡 3동 장 직인 및 계인
3. 공인개작인영 : 다음과

1980.2.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폐자인

## 개자인

## 예 규

## ◎ 서울특별시예규제 390 호

서울특별시기판기호및수신처번호  
규정증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기판기호 및 수신처번호 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 규정은 1980.1.1부터 적용한다.  
별표 경찰서단 및 소방서단에 다음과을 각각 신설한다.

기판명	기판번호	수신처번호	비고
경찰서	총암	서경 22	
소방서	남부	서소 8	